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법률 제20413호(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수시로 변경되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별표 3 개정)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을 종전에 시행령 별표 1, 2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별표 1, 2는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별표 2”를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함.
-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시간 개선(안 제28조제2항, 제4항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을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까지 확대하고, 발매마감 시간은 종전에 시행령에서 경기 시작 10분전으로 규정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스포츠윤리교육’ 명칭 반영(안 별표3 개정)
-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함
- 라.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5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18조의4제2항 위반),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18조의5제2항 위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법 제18조의6제2항 위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법 제18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 중 “별표 1과 같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운동경기를”을 “운동경기 또는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발매마감 시간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 ☐ ☐ ☐ ☐ ☐ ☐ ☐ ☐ ☐ ☐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을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1호	500
라.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2호	500
마. 법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3호	500
바. 법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4호	500

별표 5 제2호카목(중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2항제2호”를 “법 제55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중전의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거목(중전의 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너목(중전의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 제2호 라목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다목, 마목, 바목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u>별표 1과 같다.</u>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 -----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u>별표 2와 같다.</u> ③ ~ ⑦ (생략)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생략)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u>운동경기를</u>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삭제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u>체육진흥투표</u>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운동경기 또는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 시간을</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구체적인 발매마</u>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⑤ (생략)	감 시간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3